

첨부 I

이 양허표의 정의(해운 보조 서비스)

1. "해상 화물 처리 서비스"라 함은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을 말하나, 부두 노동력이 하역업체나 터미널 운영업체와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부두 노동자가 행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활동은 선박에 대한 화물의 양적하, 화물의 묶기/풀기, 선적 전이나 양하 후 화물 접수/인도 및 보관을 포함한다.
2. "통관 서비스"(또는 "세관 브로커 서비스")라 함은, 이 서비스가 서비스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을 일상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든 상관없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절차를 대신하여 수입, 수출 또는 화물 운송에 관련된 세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라 함은 컨테이너를 채우거나 비우기, 수선 및 선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항만지역이나 내륙에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행동을 말한다.
4. "해운 대리점 서비스"라 함은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점으로서 하나 이상의 선사나 해운회사의 사업 이해를 대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가.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해상운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업체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급,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획득과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나.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화물을 인수
5. "화물 주선 서비스"라 함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획득, 서류준비, 기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사를 대신하여 선적 작업을 조직 및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첨부 II

이 양허표에 사용된 영어 번역 (공급형태 3 - 법적실체의 형태)

아래 리스트는 법적실체의 형태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적용되고, 이들은 이 양허표에서만 사용된다.¹⁾

"조합(Association)" :	association, Verein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	société coopérative, Genossenschaft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société en nom collectif, Kollektivgesellschaft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àrl),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재단(Foundation)" :	fondation, Stiftung
"합작회사(Joint-stock company)" :	société anonyme (SA), Aktiengesellschaft (AG)
"제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	société en commandite, Kommanditgesellschaft
"무한조합원을 보유한 주식회사(Stock company with unlimited partners)" :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Kommanditaktiengesellschaft

1) 이들 비공식 번역은 문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근거하였음.